

추 가 약 정 서

(부동산담보대출용)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 앞

20 년 월 일

본인은 당사와 체결한 년 월 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채 무 자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제1조 개요

본인은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대출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대부거래표준약관 및 본 추가약정서에 따라 채무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2조 담보부동산 근저당권설정

①본인은 당사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목적물 소재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고, 이에 본인은 당사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지원할 것이며, 근저당권설정이 완료되기 전에 타 금융기관으로 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당사가 근저당권설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한다.

담보 목적물 소재지 :

②또한 본인은 현재 위 담보 목적물 소재지에 임대인으로서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당사와 근저당권설정 이후에도 제3자에게 위 목적물 소재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사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권리가 침해받는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임을 약속하며, 추후 위 약속과 다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은 신청인 본인이 부담함을 약속합니다.

제3조 기한이익의 상실

본인은 대부거래표준약관에서 정한 기한이익의상실 조항 이외에 다음의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대출금을 갚아야할 의무를 집니다.

1. 담보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이 있으나,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임대차금액이 없는 것으로 제출한 때
2. 개인회생 절차가 있을 때
3.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감소가 현저한 경우

제4조 대위변제

①본인은 당사에서 대출받은 이후 대부거래표준약관 제12조에 의거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후순위 채권자를 위하여 선순위 채권에 대한 법정대위변제에 동의(승낙)하며, 대위변제시 대출일, 대출금액, 대출이자, 중도상환수수료 등 상환금액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합니다.

②선순위 채권에 대한 법정대위변제시, 대위변제금액과 대위변제일 이후 대출이율은 선순위 금융기관과 약정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귀사에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